

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(제51조제1항 관련)

1. 고체위험물

운 반 용 기		수납위험물의 종류									
종 류	최대 용적	제1류			제2류		제3류			제5류	
		I	II	III	II	III	I	II	III	I	II
금속제	3,000 ℓ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
플렉시블(flexible) 합성수지제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플렉시블(flexible) 플라스틱필름제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플렉시블(flexible) 섬유제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플렉시블(flexible) 종이제(여러겹의 것)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경질플라스틱제	1,500 ℓ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플라스틱 내용기 부착	1,500 ℓ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파이버판제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목제(라이닝부착)	3,000 ℓ	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
비고)

1. “○”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용성이 있음을 표시한다.
2. 플렉시블제,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.

2. 액체위험물

운 반 용 기		수납위험물의 종류								
종 류	최대용적	제3류			제4류			제5류		제6류
		I	II	III	I	II	III	I	II	I
금속제	3,000 ℓ		○	○		○	○		○	
경질플라스틱제	3,000 ℓ		○	○		○	○		○	
플라스틱 내용기부착	3,000 ℓ		○	○		○	○		○	

비고) “○”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용성이 있음을 표시한다.